

원 안	수 정 안
<p>제44조~제46조(생략)</p> <p>제47조(용도) ①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재해위험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층이하의 부분을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6. (생략)</p> <p>제48조~제50조(생략)</p> <p>제51조(저수조시설)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호에 의거 위생적 관리를 위한 저수조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52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생략)</p>	<p>제44조~제46조(현행과 같음)</p> <p>제47조(용도) ①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 침수지역으로서</p> <p>.....</p> <p>.....</p> <p>.....</p> <p>.....</p> <p>.....</p> <p>.....</p> <p>1~6. (현행과 같음)</p> <p>제48조~제50조(현행과 같음)</p> <p>제51조(저수조시설).....</p> <p>.....저수조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제52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현행과 같음)</p>

<p>'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p> <p style="text-align: right;">'93. 5. 19 총무재무위원회</p>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3. 4. 30. 마포구청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93. 5. 6</p> <p>다. 상정일자 : 제16회임시회 제3차위원회('93. 5. 19)상정,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김영찬)</p> <p>가. 제출이유</p> <p>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p> <p>나. 주요골자</p> <p>○매각대상재산 : 공덕동 89-2 등 3필지를 추가</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p> <p>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됨.</p> <p>나. 공덕동 89-2소재 물건등 매각재산 3필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서, 점유자의</p>	<p>매수신청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하는 것임. 동 매각건은 당해지역 주민의 편의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매각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p>4. 질의 및 답변요지</p> <p>○질의(윤동현위원) : 매각대상 재산의 위치도를 보면 매각대상 재산이 도로에 들출되어 있는데 실제현황도 그러한가?</p> <p>○답변(재무과장 김영찬) : 실제로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도면이 잘못되어 있음. 앞으로는 도면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겠음.</p> <p>○질의(윤동현위원) : 매수 희망자들이 매각대상 재산을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는가?</p> <p>○답변(재무과장 김영찬) : 81년 4월부터 점유하고 있음.</p> <p>○질의(윤동현위원) : 그러면 13년동안 점유한데 대한 구청에서의 조치는 무엇인가?</p> <p>○답변(재무과장 김영찬) : 그동안은 관리가 부실하였고, 금년에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음.</p> <p>○질의(이강필위원) : 현재 점유자가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매각금액이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p> <p>○답변(재무과장 김영찬) : 의회의 승인을 얻은후 감정원의 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예정가보다는 훨씬 높아짐.</p>
---	---

'93년도 관리계획변경매각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번호	재산의 표시			매각대상 수 량	공시지가 기 준	매각 시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
	지목	소재지	일단위수량					
1	대지	공덕동 89-2	40	40	1,650,000	하반기	점유자 신청	공덕동74-10, 이만영
2	대지	공덕동 89-3	40	40	1,650,000	하반기	점유자 신청	공덕동74-11, 양춘자
3	대지	공덕동 89-4	33	33	1,650,000	하반기	점유자 신청	공덕동74-12, 장대우

관리계획변경(매각)재산내용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지적(m ²)	매수희망자 주소 및 성명	비고
공덕동89-2	대지	40	공덕동74-10, 이만영	

2. 재산의 현황

- 위 치 : 공덕동 구만리로(6m도로) 공덕1동 사무소건너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음.
- 이용상태 : 부정형 토지로서 공덕동 74-10이 만영씨가 완전 점유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3. 변경사유 :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함.

관리계획변경(매각)재산내용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지적(m ²)	매수희망자 주소 및 성명	비고
공덕동89-3	대지	40	공덕동74-11, 양춘자	

2. 재산의 현황

- 위 치 : 공덕동 구만리로(6m도로) 공덕1동 사무소건너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음.
- 이용상태 : 부정형 토지로서 공덕동 74-11양춘자씨가 완전 점유하여 영업장(전기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음.

3. 변경사유 :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함.

관리계획변경(매각)재산내용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지적(m ²)	매수희망자 주소 및 성명	비고
공덕동89-4	대지	33	공덕동74-12, 장대우	

2. 재산의 현황

- 위 치 : 공덕동 구만리로(6m도로) 공덕1동 사무소건너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음.
- 이용상태 : 사각형 토지로서 공덕동 74-12 장대우씨가 완전 점유하여 영업장(건강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3. 변경사유 :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함.

선통물천도로개설공사조속착공청원심사보고서

1993. 5. 18.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 : 마포구 염리동 41

성명 : 강 철 훈

나. 소개의원 : 손용호의원

다. 접수일자 : '93. 4. 20.

라. 회부일자 : '93. 4. 23.

마. 상정일자 : 제16회의회(임시회)

제1차위원회('93. 5. 17)상정

제2차위원회('93. 5. 18)상정, 의결

2. 청원요지

염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동 지구 진입로인 선통물천(대흥동 30~38간) 도로개설